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교부용)

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6.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록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록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8.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바.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B2B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이용자가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결제제도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은행과 결제제도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자는 결제제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 및 외담대 상환시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시간)

- ① 은행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수수료)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 전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제7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

- ① 구매기업은 은행과 제3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결제제도 이용계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을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 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 ① 은행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의 외담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0조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 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 ② 전항의 약정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구매기업의 동일한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채무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③ 전2항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기업의 동일한 구매기업에 대한 수취채권의 결제순서는 판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 11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

- ①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변경 및 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11조의 2(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
 -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 2. 무거래
 - 3. 사고신고서 접수(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 4. 법적제한
- ② 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를 하며,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금부족”미결제로서 은행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 2. “무거래”로 미결제된 때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 3.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 4. 모든 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 “예금부족”,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을 때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 ③ 제2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 거래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규약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

- ①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을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이 불가합니다.
- 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정정하는 경우
 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⑤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정정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제14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하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한 경우
 4.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5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약관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7조 (이의 제기)

- ① 이용자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